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1
------------	------

발의연월일 : 2016. 9. 27.

발의자 : 박인숙 · 손금주 · 유승민
김삼화 · 윤종필 · 전희경
주호영 · 김석기 · 박명재
이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공원에서 탐방객의 취사행위, 흡연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산불의 경우 흡연행위로 인하여 많은
삼림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내기도 함.

또한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취사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
으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지
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취사행위·흡연행위 등을 한 자에게는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공원 내의 자연생태
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
86조제3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을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 략) <u><신 설></u>	제27조(금지행위)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u>9.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행위</u>
9. · 10. (생 략) ② (생 략)	<u>10. · 11.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u> <u>2.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 시설을 이용한 자</u> <u><신 설></u>	제86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 원-----.</u> <u><삭 제></u> <u><삭 제></u> <u>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u>

<p><u>④ (생 략)</u></p>	<p><u>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u> <u>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u> <u>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u> <u>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p>
-----------------------	---